



제 16 장

변호사연수



제16장 변호사연수

1. 개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새로운 법률수요에 대처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2회에 걸쳐 전체 변호사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 및 실무지식, 직업윤리 기타 주변 학문 등에 대한 일반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문분야에 대한 회원의 실력배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97년 3월 17일 “변호사연수원”을 설립, 수강신청 변호사를 대상으로 전문분야 특별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변호사연수는 변호사들이 최신 법률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인격을 도야하고 상호협조의 정신과 연대의식을 함양케 하는 등 법조인의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키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2. 근거 규정

2007년 1월 26일 개정된 「변호사법」 제85조에 변호사 의무 연수교육 규정이 신설되었고, 「변호사법」 제85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변호사연수규칙」으로 변호사연수교육과 변호사연수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가. 변호사법

제85조[변호사의 연수] ①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경우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연수교육을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법학 관련 학술대회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연수교육에는 법조윤리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연수교육의 방법·절차, 연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나. 변호사법 시행령

제17조의2[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연수교육 시간은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다. 변호사연수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법」 제85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하여 실시하는 변호사연수교육과 변호사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변호사연수 : 공공성 있는 법률전문직으로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교육
2. 윤리연수 :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
3. 전문연수 :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 실무지식 기타 이와 관련된 인문·사회·자연과학 지식의 습득·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
4. 의무연수 : 「변호사법」 제85조에 의해 부과된 연수교육 의무의 이행으로 인정되는 변호사연수
5. 현장연수 : 연수교육 대상자의 직접 출석을 전제로 일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
6. 개별연수 : 일정한 장소의 출석을 전제로 하지 않고 비디오테이프, DVD 등 저장매체나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
7. 연수주기 : 의무연수이수시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 기간

제3조[연수의 종류] ① 변호사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한다.

② 일반연수는 변호사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는 희망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이 규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특별연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연수 :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2. 위임연수 : 협회의 위임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이하 “지방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3. 위탁연수 : 협회의 위탁을 받아 지방회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4. 인정연수 : 협회의 인정을 받아 변호사연수로 포함되는 교육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기타 강좌 등

제4조[일반연수의 실시] ① 일반연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연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연수의 원칙] ①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하며,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 장소, 방법, 효과 기타 회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개별연수를 의무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개별연수로 갈음할 수 있는 의무연수의 범위, 의무연수로 인정되는 개별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의무연수의 대상] ① 의무연수는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5세 미만의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60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질병, 출산, 장기 해외체류, 군복부 기타 연수교육을 받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회원 및 지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면제 또는 유예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연수주기 및 의무연수이수시간] ① 연수주기의 최초 기산일은 2009년 1월 1일로 하며, 의무전문연수의 연수주기 및 의무윤리연수의 연수주기는 각 2년으로 한다.

② 협회는 의무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원의 연수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연수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④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다.

제8조[의무연수이수시간의 계산] 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매 연수주기마다 10분 단위로 누적계산하며, 10분 미만의 이수시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하나의 연수교육과정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그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연수이수시간을 계산한다.

③ 각 연수주기의 중간에 개업신고를 한 회원의 의무연수이수시간 계산은 다음의 각호의 예에 따른다.

1. 개업신고일이 연수주기 기산일로부터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의무전문연수를 2시간씩 차감한다.
2. 개업신고일로부터 연수주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 남은 경우 의무윤리연수는 1시간으로 한다.

④ 개업신고일로부터 연수주기 만료일까지 6월 미만이 남은 경우 당해 회원은 소속 지방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의무연수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연수주기내에 제6조 제1항의 의무연수종료연령에 도달한 경우에 의무연수 이수시간 계산은 다음 각호의 예에 따른다.

1. 60세의 경우, 60세가 되는 날부터 연수주기 만료일까지 3개월을 초과할 때 마다 전문연수시간 2시간을 차감한다.
2. 65세의 경우, 윤리연수시간을 65세가 되는 날부터 연수주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하고, 1년 이상인 경우 면제하기로 하다.

⑥ 연수주기내에 휴업한 회원의 의무연수이수시간 계산은 다음 각호의 예에 따른다.

1. 휴업일이 속하는 연수주기의 연수의무는 재개업 시까지 유예한다.
2. 휴업기간 동안의 의무연수는 휴업기간의 합계가 3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2시간씩 차감한다.

제9조[의무연수이수시간의 확인] ① 의무연수의 대상인 회원은 자신의 의무연수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전항의 확인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임연수] ① 위임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회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년간의 연수계획
2. 위임연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개별 강좌의 세부내용 및 연수시간, 회원이 부담할 비용 등
3. 개별 강좌를 담당할 강사의 약력(강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강사 선정 기준)
4. 출석관리 등 연수관리계획
5.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협회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회에 특별연수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방회는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이후에도 변호사연수의 목적 및 당해 지방회의 연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변경에 따른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제2항의 절차에 따른 위임을 받아야 한다.

④ 협회는 위임연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 주제, 강의 자료 및 강사 관련 정보를 당해 지방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⑤ 위임연수를 실시하는 지방회는 개별 강좌별로 연수를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및 각각의 이수시간 등을 기재한 위임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연수] ① 위탁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연도와 설립목적, 활동개요
2. 위탁연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강좌의 세부내용, 강의기간 및 강의시간 합계, 회원이 부담할 비용 등
3. 강좌를 담당할 강사의 약력(강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강사 선정 기준)
4. 출석관리 등 연수관리계획
5.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협회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특별연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의 효력은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강좌에 한한다. 다만, 당해 강좌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것일 때에는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당해 강좌를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출결상황 및 이수시간 합계 등을 기재한 위탁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인정연수] ① 인정연수로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기타 강좌를 개최하는 학술단체 등은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한 학술단체 등의 창립년도, 창립목적, 구성원 및 활동 개요
2. 인정연수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술대회 등의 주제, 발표자의 약력(발표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표자 선정 기준), 발표예정내용(발표예정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의 개요), 학술대회 등의 기간 및 소요시간 합계, 회원이 부담할 비용 등
3. 출석관리 등 연수관리계획

4.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협회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술대회 등을 인정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인정의 효력은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학술대회 등에 한한다.

④ 인정연수를 실시한 학술단체는 당해 학술대회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출결상황 및 이수시간 합계 등을 기재한 인정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임연수기관 등의 의무] ① 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는 지방회, 기관, 단체 또는 학술단체 등은 연수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기타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전항의 지방회 등에 대해 회원의 연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위임 등의 철회] ① 위임연수, 위탁연수 또는 인정연수의 내용이 위임 등 당시 제출한 자료와 실질적으로 상이하거나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 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철회의 효력은 이미 실시한 연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5조[위임규정] 변호사연수의 위임, 위탁 및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사후교육인정신청] ① 위임, 위탁, 인정연수로 미리 지정 받지 않은 변호사연수를 실시한 기관이나 그 변호사연수를 받은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첨부하여 그 연수를 의무연수로 인정해 줄 것을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1. 연수를 실시한 기관, 단체 또는 학술단체 등의 개요
2. 연수일시, 장소 및 소요시간
3. 연수주제, 내용 및 연수방법
4. 연수를 담당한 강사의 약력 또는 발표자의 약력
5. 출석관리 등 연수결과보고서 또는 제1호의 기관 등에서 발급한 참석확인서
6. 참석과 관련하여 회원이 지불한 비용 등
7.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제3조에서 정한 변호사연수에 강사로서 참가한 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첨부하여 그 활동을 의무연수로 인정해 줄 것을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1. 연수 실시 주체
2. 강의일시, 장소 및 소요시간
3. 강의주제 및 주요 내용
4. 제1호의 주체가 발급한 확인서
5.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③ 국내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수학한 회원은 수학한 대학 또는 대학원, 수학한 과정의 명칭과 기간, 수학한 과목과 그 주당 시간수를 기재하고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학시간을 의무연수이수로 인정해 줄 것을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회원의 연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설치] 회원들의 의무연수 및 연수교육의 위임, 위탁, 인정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협회에 연수교육심사위원회를 둔다. 연수교육심사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연수원의 설치] ① 협회는 자체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변호사연수원을 둔다.

② 연수원은 변호사와 변호사사무직원의 연수교육을 담당한다.

제19조[연수원의 기구] ① 연수원에는 원장 1인, 부원장 1인 및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② 원장 및 부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연수원에 연수부장 1인을 두되, 연수부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임명한다.

④ 원장, 부원장 및 연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① 연수원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를 위한 교육과정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의 실행계획 수립과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에는 헌법재판소·사법연수원·대검찰청에서 추천하는 인사 각 1인을 포함한다.

④ 위원장은 연수원의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연수원 연수부장이 겸임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 제5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1조[직무] ①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원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수부장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연수원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22조[연수계획의 수립] ① 연수원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이사는 제출된 기본계획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연수대상자, 연수분야와 과목, 실시장소와 기간 등 연수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실행계획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비용 등 부과] ① 협회는 제3장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연수의 위임, 위탁, 지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해당 지방회, 기관, 단체 또는 학술단체 등에 부과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에 참가한 회원에게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특별회계] ① 연수실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과 지출은 특별회계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3. 실시 현황

가. 일반연수

변호사 일반연수는 매년 2회에 걸쳐 겨울과 여름(통상 1월과 7, 8월)에 정기적으로 회원 간의 교류 및 친목도모는 물론 회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방면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회별	일자	장소		인원(명)
1	1978.01.04. ~ 07.		강릉 동해관광호텔	30
2	1978.09.22. ~ 24.		유성관광호텔	45
3	1979.01.05. ~ 07.		부산 해운대관광호텔	67
4	1979.07.15. ~ 17.		춘천 세종호텔	37
5	1980.01.05. ~ 08.		속리산관광호텔	41
6	1980.08.15. ~ 17.		경주 신라호텔	59
7	1981.01.04. ~ 07.		도고호텔	33
8	1981.08.14. ~ 16.		내장산관광호텔	51
9	1982.01.09. ~ 10.		서울 그린파크호텔	80
10	1982.08.29.		서울 가든호텔	76
11	1983.01.07. ~ 09.		광주 신양파크호텔	94
12	1983.08.19. ~ 20.		서울 올림픽피아호텔	294
13	1984.01.05. ~ 07.		부산 조선비치호텔	285
14	1984.08.16. ~ 17.		서울 올림픽피아호텔	487
15	1985.01.08. ~ 09.		제주 그랜드호텔	194
16	1985.08.16. ~ 17.		서울 올림픽피아호텔	450
17	1986.01.09. ~ 11.		경주 코오롱호텔	215
18	1986.08.18. ~ 19.		서울 올림픽피아호텔	469
19	1987.01.08. ~ 10.		유성관광호텔	212
20	1987.08.20. ~ 21.		서울 올림픽피아호텔	535
21	1988.01.07. ~ 09.		내장산관광호텔	207
22	1988.08.18. ~ 19.		서울 올림픽피아호텔	521
23	1989.01.05. ~ 07.		부산 하얏트호텔	342
24	1989.08.10. ~ 11.	제1회 변호사대회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643
25	1990.01.08. ~ 09.		유성 리베라호텔	257
26	1990.07.27. ~ 28.	제2회 변호사대회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555
27	1991.01.07. ~ 09.		부곡관광호텔	312
28	1991.08.12. ~ 13.	제3회 변호사대회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	425
29	1992.01.08. ~ 10.		경주 콩코드호텔	313
30	1992.08.13. ~ 14.	제4회 변호사대회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	497
31	1993.01.07. ~ 08.		유성관광호텔	277
32	1993.08.13. ~ 14.	제5회 변호사대회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	837
33	1994.01.05. ~ 07.		제주 신라호텔	356
34	1994.08.16. ~ 17.	제6회 변호사대회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	688
35	1995.01.05. ~ 07.		부산 파라다이스비치호텔	628
36	1995.08.11. ~ 12.	제7회 변호사대회	서울 롯데호텔	657
37	1996.01.08. ~ 10.		경주 현대호텔	637

회별	일자	장소		인원(명)
38	1996.08.12. ~ 13.	제8회 변호사대회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	828
39	1997.01.06. ~ 08.		유성 리베라호텔	418
40	1997.08.18.	제9회 변호사대회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	600
41	1998.01.12. ~ 14.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533
42	1998.08.10.	제10회 변호사대회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	803
43	1999.01.11. ~ 13.		유성 리베라호텔	342
44	2000.01.10. ~ 12.		제주 신라호텔	257
45	2000.08.21.	제11회 변호사대회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	726
46	2001.01.08. ~ 10.		경주 현대호텔	330
47	2001.07.23.	제12회 변호사대회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946
48	2002.01.07. ~ 09.		유성 리베라호텔	526
49	2002.08.19.	제13회 변호사대회(50주년)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991
50	2003.01.06. ~ 08.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390
51	2003.08.25.	제14회 변호사대회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844
52	2004.01.07. ~ 09.		제주 신라호텔	191
53	2004.08.23.	제15회 변호사대회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489
54	2005.01.05. ~ 06.		대전 유성호텔	349
55	2005.08.29.	제16회 변호사대회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	774
56	2006.01.09. ~ 11.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413
57	2006.08.21.	제17회 변호사대회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790
58	2007.01.08. ~ 10.		제주 롯데호텔	334
59	2007.08.27.	제18회 변호사대회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1,787
60	2008.01.07. ~ 09.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513
61	2009.01.05. ~ 07.		대전 리베라호텔	434
62	2009.08.31.	제19회 변호사대회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1,193
63	2010.02.22. ~ 23.	제1회 인권·환경대회	청주 라마다호텔	453
64	2010.08.30.	제20회 변호사대회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1,320

나. 특별연수

전문분야 특별연수는 매년 시의에 적절한 전문분야의 실무 및 이론에 관하여 집중적인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기수	분야	연수기간	수강 인원	수료 인원	수료율	장소
1	지적재산권	1997.10.13.~ 24.	45	34	75.56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지하1층)
2	지적재산권	1997.11.10.~ 21.	45	33	73.33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지하1층)
3	행정쟁송과 공정거래	1998.03.30.~ 04.10.	50	37	74.00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지하1층)
4	행정쟁송과 공정거래	1998.04.13.~ 24.	50	36	72.00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지하1층)
5	조세법	1998.09.14.~ 25.	50	35	70.00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지하1층)
6	조세법	1998.10.12.~ 23.	51	34	66.67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지하1층)
7	국제거래법	1999.05.17.~ 28.	100	69	69.00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지하1층)
8	회사갱생 및 파산법	1999.10.04.~ 15.	100	66	66.00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지하1층)
9	회사갱생 및 파산법	1999.11.15.~ 26.	100	86	86.00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지하1층)
10	환경법	2000.04.10.~ 21.	100	66	66.00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지하1층)
11	노동법	2000.09.18.~ 29.	128	92	71.88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지하1층)
12	금융관계법	2000.11.20.~ 12.01.	130	97	74.62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지하1층)
13	의료관계법	2001.05.14.~ 25.	203	137	67.49	사법연수원 중강당
13-2	의료관계법	2001.06.09.~ 10.	120	114	95.00	경주 현대호텔
14	IT 관계법	2001.09.17.~ 26.	186	136	73.12	사법연수원 중강당
15	건설관계법	2001.11.12.~ 17.	292	224	76.71	사법연수원 중강당
16	지적재산권	2002.03.18.~ 23.	160	131	81.88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지하1층)
16-2	지적재산권	2002.03.25.~ 30.	160	124	77.50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지하1층)
17	의료·건설관계법	2002.04.20.~ 21.	155	143	92.26	전주 코아호텔
18	기업구조조정 관계법	2002.06.10.~ 15.	165	125	75.76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지하1층)
18-2	기업구조조정 관계법	2002.06.17.~ 22.	167	110	65.87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지하1층)
19	금융관계법	2002.10.07.~ 12.	272	197	72.43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20	지적·기업구조조정 관계법	2002.11.09.~ 10.	76	72	94.74	경주 힐튼호텔
21	조세관계법	2003.03.17.~ 22.	325	282	86.77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22	금융·조세관계법	2003.04.26.~ 27.	74	70	94.59	광주 프라도호텔
23	민사집행법	2003.05.26.~ 31.	320	262	81.88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24	건설관계법	2003.06.23.~ 28.	300	240	80.00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26	노동관계법	2003.11.10.~ 15.	234	181	77.35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27	증권법	2004.04.12.~ 17.	300	242	80.67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28	특수지적재산권	2004.05.22.~ 23.	113	105	92.92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
29	등기·경매 실무	2004.06.21.~ 26.	300	253	84.33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30	해상·보험	2004.09.18.~ 19.	66	66	100.00	부산 롯데호텔
31	금융거래법	2004.10.16.~ 21.	145	133	91.72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32	가사쟁송	2004.11.15.~ 20.	266	212	79.70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33	공정거래법	2005.04.25.~ 30.	248	199	80.24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34	보험법	2005.05.16.~ 21.	235	191	81.28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35	건설관계법	2005.06.13.~ 18.	311	276	88.75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36	증권관련 집단소송	2005.09.26.~ 10.01.	164	131	79.88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기수	분야	연수기간	수강 인원	수료 인원	수료율	장소
37	통합도산법	2005.11.21.~ 26.	312	246	78.85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38	민사집행·보전소송	2006.03.18.~ 25.	310	282	90.97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40	특허법	2006.05.20.~ 27.	219	193	88.13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41	노동관계법	2006.06.17.~ 24.	256	234	91.41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42	금융거래법	2006.09.17.~ 23.	259	231	89.19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43	통합도산법	2006.11.04.~ 11.	311	281	90.35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44	언론관계 소송의 제 문제	2007.03.17.~ 24.	134	122	91.04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지하1층)
45	기업의 인수·합병의 제 문제	2007.04.21.~ 28.	316	287	90.82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46	약관규제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제 문제	2007.05.19.~ 26.	71	62	87.32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지하1층)
47	특수불법행위	2007.06.16.~ 23.	161	143	88.82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48	저작권법	2007.09.08.~ 15.	244	224	91.80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49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2007.11.17.~ 24.	313	271	86.58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50	2007년도 주요판례 해설	2008.03.22.~ 29.	283	265	93.64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51	가사사건의 제 문제	2008.04.19.~ 26.	322	300	93.17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52	재건축·재개발 관련사건의 제 문제	2008.05.24.~ 31.	330	296	89.70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53	건설관련 소송의 쟁점	2008.06.21.~ 28.	330	305	92.42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54	조세법의 제 문제	2008.09.20.~ 27.	310	285	91.94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55	민사집행 보전소송	2008.11.15.~ 22.	344	320	93.02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56	재건축·재개발	2009.02.21.	351	311	88.60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57	2008년도 주요판례 해설	2009.03.21.	290	255	87.93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58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2009.04.18.	159	139	87.42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59	상사사건의 제 문제	2009.05.18.	241	221	91.70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60	기업법무 일반	2009.06.20.	260	232	89.23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61	특허출원·세무기장대리·노무	2009.07.11.	120	109	90.83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지하1층)
62	등기·부동산 경매	2009.07.18.	213	192	90.14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지하1층)
63	부동산 소송	2009.09.19.	209	196	93.78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지하1층)
64	공익사업과 보상	2009.10.17.	218	202	92.66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지하1층)
65	부동산 소송	2009.10.31.	221	208	94.12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지하1층)
66	헌법과 헌법소송	2009.11.21.	128	124	96.88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지하1층)
67	민사법(계약법의 제 문제)	2010.01.09.	194	178	91.75	변호사교육문화관
68	형사법	2010.01.23.	118	104	88.14	변호사교육문화관
69	손해배상	2010.02.06.	203	188	92.61	변호사교육문화관
70	공정거래법	2010.03.13.	155	141	90.97	변호사교육문화관
71	상사 회사법	2010.03.27.	143	135	94.41	변호사교육문화관
72	자본시장법	2010.04.03.	196	184	93.88	변호사교육문화관
73	가사법	2010.04.17.	203	194	95.57	변호사교육문화관
74	금융법	2010.05.01.	149	133	89.26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75	기업인수합병	2010.05.15.	186	174	93.55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76	방송통신법	2010.06.01.	69	67	97.10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77	의료법	2010.06.19.	115	113	98.26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78	건설 부동산 관련법	2010.07.03.	288	269	93.40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79	중재법	2010.07.17.	84	80	95.24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